



현행 전자무역촉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omplimentary Issues of Electronic Trade Promotions Act in Korea

저자 (Authors)	심종석, 서민교 Chong-Seok Shim, Min-Kyo Seo
출처 (Source)	관세학회지 10(3) , 2009.8, 201-219 (19 page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0(3) , 2009.8, 201-219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관세학회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442075
APA Style	심종석, 서민교 (2009). 현행 전자무역촉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10(3), 201-219.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현행 전자무역촉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omplimentary Issues of Electronic Trade Promotions Act in Korea

심 종 석(Chong-Seok Shim)*

서 민 교(Min-Kyo Seo)**

Abstract

The framework of electronic trade promotions act was made of chap. 11 and art. 33(2009. 01. 3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develop the electronic trade and to promote practical use of electronic trade, so as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Regarding to the main legal concept of this act was in order to the electronic trade, trading firms, electronic trade messages, infrastructure of electronic trade and so on. The main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electronic trade message mean information which is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in a kind of electronic form by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i.e. IPS) in electronic commerce act(2009. 03. 18). In this case IPS shall mean electronic devices or systems which have an IPS to be utilized for the generation, transmission, reception or store of electronic messages. In the other hand infrastructure of electronic trade shall mean information system which is to execute relating intermediated or stored of electronic trade mess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deal with in order to definition of electronic trade messages and information system, establish the foundation of electronic trade, designation system of electronic trader, use of electronic trade infrastructure, legal effect of electronic trade messages, finally information security of electronic messages and trade information.

Key-Word : electronic trade promotions act, electronic trade, electronic trade messages, infrastructure of electronic trad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designation system of electronic trader, information security

< 목 차 >

I. 서론

II. 전자무역법 제정취지와 주요
개정이유

III. 전자무역법의 주요 골자와
개정방향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제1저자)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의 고도화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상관습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은 물론, 각국간 실정법 또는 국제상사법규범상의 체계를 수시로 변모케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고도화 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기축은 주지하듯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s)를 매개(intermediary)로 한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이하 'IPS'라 약칭한다)이 그 실질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90년도 중반 웹의 출현 이후 당해 분야의 고도화 추세를 부양한 IPS는 초창기 상인간 상거래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였으나, 불과 수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상거래 활동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법적 시각에서 살피기에, 당해 전자상거래계로부터 확립된 상관습은 법적 확신에 기한 체계화의 과정이 여타 분야와는 사뭇 다른 과정으로 전개되었거나 또는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다수의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랜동안 확립'(long established)되어 왔거나 혹은 '옛 것'(ancient)이어야 한다는¹⁾ 엄격한 제한을 스스로 탈피하거나 때로는 철저히 배격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이 같은 적시는 당해 상관습의 체계화가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무쌍한 급진전 및 고도화에 기인하였음을 함의한다.

한편 전자상거래분야에 있어 급진전된 상관습의 체계화는 전통적 법규범의 경화(hardship)현상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였는데, 그 실체는 전통적 상거래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소위 전자문서,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등이었다(北川善太郎, 2002).

이상의 개념들은 그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법규범을 제정하는 동인이 되었거나, 달리 기 제정된 법규범에 대한 개정 또는 보완의 이유가 되었던 바, 논제에 기하여 이하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현행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9705호, 2009.01.30 : 이하 '동 법' 또는 '전자무역법'이라 약칭한다) 또한 예외로

1) Honnold, J. O.(1999).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l. 126-127.

둘 수 없었다.

입법연혁에 비추어 동 법은 당초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4479호, 1991.12.31)로 제정·공포되어, 총 10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6차 개정 시 현행 전자무역법으로 법령과 전면개정에 이른 것은 주목할 만한 경과이다.

당시 법령의 변경사유는 국제무역에 있어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IPS의 사용으로부터 비롯되는 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법적 지원책으로서 제반 제도적 인프라가 현실에 맞게 적절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주안점을 두었다. 곧 동 법의 법령변경에 의한 개정의 필요는 앞서 언급 하였던 바와 같이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의 급진전에 기인한 법기능적 차원에서 의 피치 못할 과정이었다.²⁾

당해 변경사유의 주요 골자는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폐쇄형 전용망(closed proprietary networks)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형 전용망(opened networks)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무역문서의 반복제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무역업무 처리시간 단축과 그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었다(산자부, 2005).

그렇다면 현행 전자무역법이 입법취지에 기하여 당초 의도했던 바 그대로 법 기능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혹여 현재 또는 이후로도 법적용상 예견가능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령 예상치 못했던 법적 문제점 내지 장애가 있다면 그 개선 내지 보완과제는 무엇인지가 논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인 바, 본고는 이상의 논점을 연구대상으로 특정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구성체계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이후 정보화 강국으로서 지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같은 시각에서 논제에 기하여 우리나라는 전자문서에 의한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절차 간

2) 동 법 전면개정의 단초는 정부의 '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2003년 08월 정부혁신 정부분권위원회에 의한 선정 및 동 년 12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확정)에 따른 전자무역 인프라, 곧 'uTrade-Hub' 구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2008년 7월말 전격 개통됨에 따른 법적 기반확립에 있다. 관련 실상에 대한 상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KIEP 지역경제포커스. 08-35호., 전자무역 지원정책, 곧 'e-Trade Korea 2007'(2003)에 대해서는 최용록(2005), 전자무역지원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272-273.

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무역법은 그 실질적인 법적 기반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그렇다면 현행 동 법의 규정내용을 검토·평가하고, 그 시사점 및 유의점에 관한 법적 함의를 명료히 추론하여, 실무계를 향하여 동 법의 적용상 예기치 못했던 법적 문제점 내지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외 전자상거래 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한 참여를 의도하고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추구하는 바, 그 이해를 적의 보전할 수 있는 법적·상무적 기반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함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논제에 기한 본 고 구성체계는 우선 현행 동 법의 주요 내용과 규정체계를 명료히 이해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간 주요 개정언해를 사유와 함께 되짚어 보고, 이로부터 동 법의 입법상 불비 또는 개선과제를 추론함과 동시에,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³⁾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한 고도의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내지 안정성에 기초하여 동 법에 대한 법적 개선과제를 추론하여 명료히 할 수 있음은 긴요한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결과가 향후 실무계는 물론, 학제간 유관분야에서의 후속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전자무역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개정이유

1. 전자무역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골자

당초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로 공포된 동 법은 입법취지를 무역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함과 동시에, 무역업무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유관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다.

그간 전통적 종이문서(paper-based document)에 의한 무역업무 처리방법은 절차상 필요외적 시간·비용 및 인력소모 등을 야기하여 무역업계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에서 전자문서에 의

3) 이 경우 타 법률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9504호, 2009.03.18), 전자서명법(법률 제8852호, 2008.02.29),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9637호, 2009.07.23) 및 국제법규범으로서, 국제상사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이하 ‘UECIC’라 약칭한다) 등을 말한다.

한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무역절차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차원에서 피치 못할 입법적 산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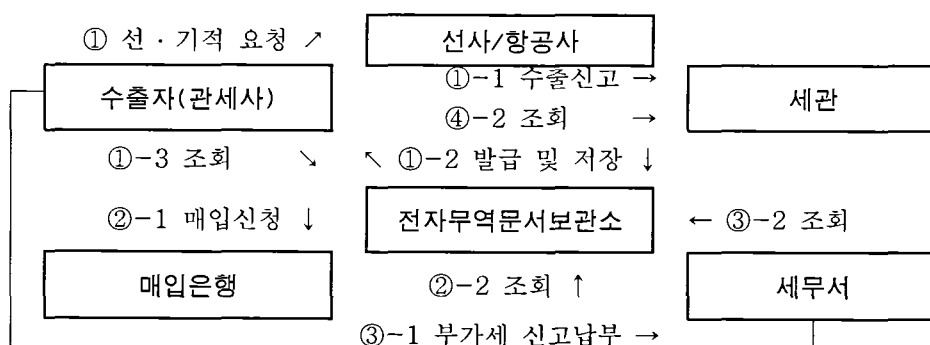
<표 1> 무역업무자동화와 전자무역의 비교⁴⁾

☐ 종이문서에 기반한 서류를 VAN중계사업자(KTNET)를 통해 전자적으로 교환 ☐ 1:1 네트워킹으로 기관간 연계가 한계 -무역문서의 반복제출	☐ 전자무역플랫폼을 통해 일관성있게 One-Stop으로 처리 -전자문서 유통성확보(반복제출방지) -연계 네트워킹(무역업무 연속 처리) ☐ 국가 Hub로서 글로벌 연계 가능
---	--

자료 : 산자부(200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을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5면.

제정취지에 기한 동 법의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첫째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무역업무에 대한 자동화사업은 관계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현행 종이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 대신에 관계기관이 고시하는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의해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하는 것은 무역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한 문서에 의하여 무역업무를 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자문서 위·변조와 그 내용의 누설 등을 방지하여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표 2>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무역문서의 반복제출생략 사례



자료 : 산자부(2005). 상해보고서, 5면.

4) 전자무역 인프라 연동 기술표준에 따른 거래모델의 상세는 노재확(2006). 공정 경쟁 관점에서 평가한 전자무역촉진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223-224.

요건대 등 법은 전자무역기반시설, 곧 e-Trade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무역절차상 비효율적 무역문서의 반복제출을 방지하고, 무역업체에게는 단일창구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에 취지를 두고 있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무역문서 반복제출 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고, 아울러 e-Trade 플랫폼 구축사업 경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e-Trade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경과

구분(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예산/억원
1차('04.12-'05.06)	-e-L/C 유통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전자무역보관소 시범구축	17.9
2차('05.10-'06.08)	-전자무역문서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무역업체용 전자무역포탈 구축	96
3차('06 하반기)	-10종 전자무역문서의 유통관리시스템완료 -물류·통관용 전자무역포탈 구축 -해외마케팅 종합검색시스템 구축	87
4차('07 하반기)	-수출·입 대금결제시스템 구축 -무역업체·기관에 맞춤형 사용자 솔루션 개발	93

자료 : 산자부(200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0면.

2. 전자무역법의 개정이유 : 사안별 주요 쟁점과 관련

1) 무역관리체계의 개편(법률 제5211호, 1996.12.30)

수출·입 거래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시대적 조류에 편승한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상지원 구체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관계기관은 무역진흥을 위하여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당해 통상진흥시책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별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무역업의 요건으로서 무역업 등록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였다.

셋째 물품의 수출·입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제한을 철폐하고, 다만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 생물자원보호, 무

역균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예외로 두었다.

넷째 관계기관은 수출·입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EDI) 등 전자적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관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당해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수입국 정부의 위임으로 선적 전 우리 기업의 수출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WTO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를 수용하였다.

일곱째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등 불공정수출입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으로 존치하였다.

2) 무역업무자동화사업자 지정 간소화(법률 제5769호, 1999.02.05)

무역업무자동화사업자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의 사업계획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무역업무자동화 지정사업자와 이용자 간 체결된 무역자동화망 이용 등에 관한 약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지정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에 주안점을 두었다.

3) 전자무역 기반시설로의 전환·운영(법률 제7751호, 2005.12.23)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 및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폐쇄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형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무역문서 반복제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무역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유도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전부개정의 이유를 두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법령을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는데, 변경의 명목 내지 기대효과는 다자간 전자문서 유통의 실현,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연계된 전자무역기반시설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확립,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운영 등이었다.

둘째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하였다. 그 배경은 무역업무자동화를 전자무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무역자동화사

업자 지정제도를 모든 무역절차에서 연속적인 전자무역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 전자무역기반 시설은 국가 인프라로서 동 시설의 구축 및 운영은 공공성·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기 위한 취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한 전담 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국가인프라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대 등에 두었다.

셋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을 의무화하였다. 당해 의무화의 핵심은 무역절차 간소화·신속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무역업자와 유관기관이 무역절차에서 반복유통되는 신용장·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요건확인서·원산지증명서·수입화물선취보증서·적하보험증권·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전자문서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반복제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무역기반 시설 이용, 전자무역문서의 연속적이고 신속한 제3자 유통가능성 확보 등이었다.

4)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규제 완화(법률 제9377호, 2009.01.30)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업무개시 전에 업무종류 및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유관법률에 따라 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에 역점을 두었다.

5)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9705호, 2009.05.22)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 법의 타 법률과 관계에서 정보화촉진법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그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곧 관계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계기관은 당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한 한국정

보화진흥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둘째 국가정보화의 추진안에 관한 사항이다. 공공·지역·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다.

셋째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을 명문화하였는데, 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과 관련 정부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표 4> 전자무역법의 주요 개정사유 요약

차수	개정사유	주요 내용	관련조문
※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제정	(1991.12.31)	
01	정부조직에 대한 기능조정 (법률 제4541호, 1993.03.06)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 신설	제4조
02	무역관리체제 개편 (법률 제5211호, 1996.12.30)	산업피해구제제도 보완	제8조
03	행정절차법 운영실효성 확보 (법률 제5453호, 1997.12.13)	다양한 의견청취유형 정비	제20조
04	정부조직법의 개정 (법률 제5769호, 1999.02.05)	관계기관의 명칭 정비	제22조
05	전자무역법 전부개정 (법률 제7751호, 2005.12.23)	전자무역기반시설 전환·운영	전문
06	법문장 표기 및 체계정리 (법률 제8381호, 2007.04.11)	복잡한 법문장 체계정비	제12조
07			제18조
08	정부조직의 효율적 재배치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정부부처의 재·개편	제6조
09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규제완화 (법률 제9377호, 2009.01.30)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제25조
10	정보화촉진 국가원칙제시 (법률 제9705호, 2009.05.22)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마련	제4조

Ⅲ. 전자무역법의 주요 골자와 개정방향

1. 전자무역법의 주요 골자

총 11장 33개조로 구성된 현행 전자무역법(법률 제9705호, 2009.05.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동 법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를 다루고 있다(제1조-제3조). 제2장은 전자무역촉진 추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내용과,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조정내용을 다루고 있다(제4조-제5조). 제3장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결격사유·업무준칙의 신고사항·역무제공·시정명령·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11조).

<표 5> 전자무역법의 구성체계

장 별 : 조문 별	규정내용
제1장 : 제01-03조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제2장 : 제04-05조 (전자무역촉진추진체계)	전자무역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 등
제3장 : 제06-11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결격사유, 업무준칙의 신고, 역무제공,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제4장 : 제12-15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이용 등)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신청 또는 승인 등의 효력, 효력 등
제5장 : 제16-17조 (전자무역문서보관·증명)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증명 등
제6장 : 제18-19조 (전자무역문서이용촉진)	전자무역문서 이용촉진, 신청시 첨부서류와 특례 등
제7장 : 제20-21조 (전자무역문서보완·관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 공개 등
제8장 : 제22-23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지원, 등록취소 등
제9장 : 제24-25조 (전자무역기술개발추진)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장 : 제26-29조 (보칙)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청문, 권한위임 및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제11장 : 제30-33조 (벌칙)	벌칙, 양벌규정

제4장은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전자무역문서 표준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신청·승인 및 전자무역문서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2조-제15조). 제5장은 전자무역문서 보관 및 증명에 관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및 증명 등을(제16-17조), 제6장은 전자무역문서 이용 촉진,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제18조-제19조), 제7장은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과 무역정보의 공개(제20조-제21조), 제8장은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및 등록취소(제22조-제23조), 제9장은 전자무역 기술개발 추진내역과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타 법률과의 관계(제24조-제25조), 제10장은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청문, 권한의 위임,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보칙(제26조-제29조), 제11장은 벌칙과 양벌규정(제30조-제3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위 <표 5>와 같다.

2. 전자무역법의 사안별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정의규정

현행 동 법은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절차별로 일대일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무역업무자동화’를 IPS 등을 통해 무역업체와 유관기관이 전자문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무역’으로 변경시키고자 함이 주요 골자이다.

이 경우 ‘무역업무자동화’란 각 개별 무역절차에서 서류를 수작업에 의해 제출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반면, ‘전자무역’은 각 개별 단위 무역업무를 연계하여 모든 무역절차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 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전자무역’을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명시하고, 이 경우 ‘전자무역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제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대한 동 조 제5호의 정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기에 ‘전자무역문서’를 ‘전자문서’에 의제하여 두고 있음은 그 실질에 있어 무역문서에 해당하는 기준과 요건을 명정하고 있지 않은 차제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곧 ‘전자무역문서’를 동 법의 정의규정으로 수용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보다도 관계당사자간 반복적으로 교

부·인도 내지 제출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필요외적 경비를 절감하여 무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에 법적 취지를 두고 있다면, 이에 상당한 무역문서의 특징이 당해 규정에 수용되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⁵⁾.

무역문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는 승인·면허·인증·신고·수리 등을 요건으로, 예컨대 신용장·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수입면장·원산지증명서·수입화물선취보증서·적하보험(창고)증권·화물인도지시서 등을 기본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 같은 명확한 개념 내지 정의규정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동 법 제6조에서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은 물론,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명료히 설정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할 것이다.

복잡다단한 국제상거래의 절차와 과정을 고려할 경우 ‘전자무역문서’에 대한 이 같은 모호한 정의는 당해 상거래계의 효율성 증진에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할 것인 바, 결국 ‘전자무역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에 의제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별단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체계 내에 적의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조 제5호에서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이라는 자구는 타 법률과 관계성을 논하고 있지 않은 차제에 명료한 개념 또는 정의됨이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시 전자무역기반업무의 수행에 있어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automat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에 의한 무역정보의 이용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된다. 당해 논점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에 있어 제3자에 의한 수권대리의 법적 문제를 함의한다.

결국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이를 전자거래기본법을 원용하여 의제하거나, 달리 규정 내에 명시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자무역촉진 추진체계의 구축

동 법 제4조는 관계기관이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등 전자무역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는 전자무역의 촉진과 관련하여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및 전자무역 추진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5) 전자문서의 활용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상세는 양재훈(2007).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2호. 162-163.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유관부처간 협의·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살피기에 동 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제6차 보고서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무역절차는 마케팅·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로서 계약 당사자를 포함하여 수출·입 관계기관, 은행, 관할세관 등 여러 기관 및 업무가 복합되어 있음에 따라, 무역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작업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 생각된다.

다만 문제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전자무역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등 전자무역촉진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곧 이를 관계기관에 일임해 두지 않고, 예컨대 민·관이 결합된 별단의 조직체계에 일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조직에 의해 마련된 시책 전반을 관계기관이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동 법 제6조에 명시된 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업범위에 있어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은 동 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데, 곧 당해 규정은 그 내용을 중계·보관·증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하고 있다.

동 조는 IPS의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서나, 전자거래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서명법 등의 타 법률과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그 특정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는 여지가 예견되는 바, 이를 서명·인증·작성·송신 및 수신·확인 등의 업무로 확장하거나 또는 당해 유관법률을 원용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취지는 무역업체 내지 유관기관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나 단일창구를 이용한 일관된 업무프로세스 전개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시각에 근거한다.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

동 법 제6조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국가인프라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고, 그 운영은 공공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을 설정하

여 그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담 기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국가인프라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발생 및 보안관리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진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전자무역기반구축사업의 공익적 성격상 그 공공성·중립성 및 전문성 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동 법 제6조 제1호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기준을 전문성에 관한 사항 위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아울러 제7조에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제8조에서는 업무준칙의 신고, 제9조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 시정조치의 내용을, 제11조는 지정취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상의 제 규정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공공의 차원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 생각된다.

이상에서의 논점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공공성·중립성 및 전문성 등의 확보에 대한 기준과 요건에 대한 사항인데, 곧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내지 ‘전자무역기반업무’에 대한 정의규정의 존치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공공성 및 중립성 등에 대한 요건 및 그 실체의 확보는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전문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고 있음을 볼 때, 당해 기준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의적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대한 해당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할 것인 바, 따라서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의 규정내용에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기준을 명료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 법의 합목적성 내지 안정성 차원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논점이라고 판단된다.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동 법 제12조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임의적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다만 무역기반시설의 확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강제가 필요한 무역문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무역유관기관이 발급하는 주요 문서를 의무적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저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역문서의 반복제출을 방지하고 무역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생각전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관한 동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무역업무절차와 과정을 획일화함에 있어 동 조의 규정내용은 무역유관기관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기에 동 조의 규정내용이 가사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동 법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과 최소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 없이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 협력의 유도만으로는 e-Trad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주요 무역문서의 반복제출 방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의무화에 관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의 차원에서 그 선택에 맡겨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조의 내용은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의 실효성 확보 및 무역업자 등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적의 재고되어야 할 규정이라 생각된다. 이에 덧붙여 전자무역문서 의무화 대상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문서의 예를 열거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 6> 전자무역문서 의무화 대상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문서의 예시

발급(문서 수)		문서의 예시
무역 유관 기관	공공기관(04)	원산지증명서(01), 수출 · 입요건확인서(02), 수출신고필증(03), 수입신고필증(04).
	은행, 선사, 보험사 등(08)	신용장(05), 내국신용장(06), 구매확인서(07), 선하증권(08), 수입화물선취보증서(09), 적하보험증권(10), 화물인도지시서(11), 항공화물운송장(12).
무역업체(07)		상업송장(13), 청약서(14), 세금계산서(15), 포장명세서(16), 거래명세서(17), 물품수령증명서(18), 환어음(19).

자료 : 산자부(200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면.

5)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증명의 효력

동 법 제14조 내지 제17조는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신청 또는 승인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 당해 신청 또는 승인과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는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중계한 경우 종이문서에 기한 절차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으로 간주된다.

한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문서의 보관에 있어 안전성·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문서보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업자 등의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입법조치로 이해된다.

또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그 당사자 등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곧 전자문서의 내용·시점 및 당사자 등에 대한 증명에 법적 증거력을 부여하여 전자무역문서 이용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로 보인다.

이 경우 적시할 수 있는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관한 것이다. 곧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시기 등을 증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과 요건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당해 사안의 핵심이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 송·수신시기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IPS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제6조 제1호), 아울러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수신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3호). 또한 영업소가 복수이상인 경우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용인되고 있는 ‘국제계약에있어전자적의사표시의이용에관한UN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이하 ‘UECIC’라 약칭한다)의 처지와는 구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곧 송·수신시기에 대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은 UECIC와 비교하여 ‘떠난 때 또는 떠나지 않았다면 수신된 때’(UECIC)라고 하는 내용과 ‘입력된 때’(전자거래기본법)라고 하는 자구상 차이점이 있다(심중석, 2008).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송·수신에 따른 책임귀속에 기한 관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환언하면 IPS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이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관계에 있어 작성자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면’에 대한 귀속효를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수신확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존치해 두고는 있으나, 법률관계의 명료한 확정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UECIC 규정내용에 준한 개정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IPS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을 매개로 한 상업적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의 효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적시한 논점에 대하여 양 법률간 적절한 조화 내지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의한 전자무역문서 송·수신시기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국내·외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널리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6)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대한 보안

동 법 제20조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등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변조하거나 또는 위·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울러 그와 같은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 법 안 제30조 및 제31조는 위와 같은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대한 보안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벌칙규정을 명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대한 위·변조 또는 비밀침해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e-Trade 플랫폼을 통해 모든 무역절차가 연계되어진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 체계에서는 무역문서 등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이에 대한 세부시행세칙 등에서의 적절한 기준제시가 요구된다.

한편 동 법 제20조 및 제30조 등에서 자구상 컴퓨터 화일이라고 함은 이미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보처리시스템’, 곧 전자문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정의되어 있는 바, 이 또한 명료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본 고는 현행 전자무역법이 범기능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법적용상 예견가능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그 내용은 동 법의 주요 개정연혁을 사유와 함께 평가하고, 이로부터 동 법의

입법상 불비 또는 개선과제를 추론함과 동시에,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 등이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규정에 대하여 동 법은 전자무역문서를 전자문서에 의제하여 두고 있는 바, 당해 상거래계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동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별단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법상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이라는 자구는 타 법률과 관계성을 논하고 있지 상황에서 명료한 개념 또는 정의됨이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일하여 규정 내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무역촉진 추진체계의 구축과 관련, 전자무역촉진시책의 수립은 관계기관에 일임하는 것보다 민·관이 결합된 별단의 조직체계에 일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당해 조직에 의해 마련된 시책 전반을 관계기관이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술보급 및 사후관리사업은 그 범위를 서명·인증·작성·송신 및 수신·확인 등의 업무로 확장하거나 또는 당해 유관법률을 원용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무역사업자 지정제도에 관해서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공공성·중립성 및 전문성 등의 확보에 대한 기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바, 이에 최소한의 적정기준을 명료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동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무역업무 절차와 과정을 획일화하고 있는 당해 규정은 무역유관기관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할 것으로 이에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의무화에 관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의 차원에서 그 선택에 맡겨져야 할 것인 바, 그 내용을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의 실효성 확보 및 무역업자 등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적의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증명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관한 문제가 부각되는 바, 예컨대 전자거래기본법 및 UECIC의 양 범규범을 참고하여 국내·외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시급한 규정개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KIEP 지역경제포커스**. 08-35호.
- 노재확(2006). 공정 경쟁 관점에서 평가한 전자무역촉진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7(1), 223-224.
- 산자부(200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을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_____(200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을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_____(2007). **전자거래기본법심사보고서**.
- _____(2008).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22)**.
- 심종석(2008).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9(4), 251-252.
- 양재훈(2007).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자무역연구**, 5(2), 162-163.
- 최용록(2005). 전자무역지원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7(4), 272-273.
- 北川善太郎(2002). システム契約-情報化社會におけるしい契約類型, NBL No. 393, Chap. I.
- Honnold, J. O.(1999).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3rd ed.)*. Kluwer Law Int'l. 126-127.
- UNCITRAL(2008).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대외무역법(법률 제9211호, 2008.12.26)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4479호, 1991.12.31).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9705호, 2009.01.30).
- 전자서명법(법률 제8852호, 2008.02.29)
-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9637호, 2009.07.23)